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 (제 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총리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 전

## 1. 의결주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최근 공직자등이 민간부문에 대해 채용, 협찬, 후원 요구 등 부정행위를 하는 행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민간부문의 자유롭고 공정한 활동을 보장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공직자등의 민간 부문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한 공직자등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

한편,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을 받고 직무를 수행하는 위법 사례가 근절되지 않아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음. 이에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이 받는 최고 벌칙 수준을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자 함.

청탁금지법상 신고자 비밀보장의무 위반, 보호조치 미이행, 불이익 조치, 신고의 방해·취소 강요 등 행위의 벌칙 수준을 상향하여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과 일치시킴으로써 신고자 보호의 일관성·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공직자의 민간부문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안 제1조, 제2조, 제5조의2, 제23조)

- 1) 청탁금지법의 목적에 공직자등의 부정청탁 금지를 명시함
- 2) 공직자등이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등이 아닌 자에게 청탁이 금지되는 10가지 대상 직무를 열거하고, 민간부문과의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저해되지 않도록 예외 사유를 명시함
- 3) 안 제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공직자등이 아닌 자에게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등에 대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나.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자, 보호조치 위반자 등 형벌 상향(안 제22조)

- 1)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이 받는 형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여 실효성을 제고함
- 2) 신고자 비밀보장의무 위반, 신고자 보호조치 미이행, 신분상 불이익 조치, 그 외 불이익 조치, 신고 방해 및 취소 강요 등 신고자 보호조치와 관련하여 법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수준을 상향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타 반부패 법률과 일치시킴으로써 신고자 보호수준의 일관성을 확보함

####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기관 합의 예정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행정규제 : 사전규제심사 결과 규제 비대상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 공직자등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공직자등이 아닌 자에 대한 부정청탁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등이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검사·시험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

치도록 하는 행위

3.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4. 각종 자문·심의·의결 위원회의 위원, 시험·선발 위원 등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5.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6.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8.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9. 각종 평가·판정 업무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10.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의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업무의 진행상황·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문의 등을 하는 행위

위

2. 업무에 관한 확인·증명 등을 신청·요구하는 행위

3.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조”를 각각 “제5조, 제5조의2 및 제6조”로 한다.

제16조 중 “제5조”를 “제5조, 제5조의2”로 한다.

제1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등이 제5조의2를 위반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등 또는 제3자에게 교부된 금액 또는 물건이나 그 밖에 재산상 이익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년”을 “5년”으로,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년”을 “2년”으로, “1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제1항제1호부터 제3호”를 “제2항제2호부터 제4호”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

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2. 제8조제1항을 위반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공직자등은 제외한다.
3. 자신의 배우자가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알고도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
5.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6. 제1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18조를 위반하여 그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공직자등

제23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를 “제22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로 한다.

3. 제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공직자등이 아닌 자에게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제24조 본문 중 “제22조제1항제3호”를 “제22조제2항제4호”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lt;신 설&gt;</p>	<p>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 공직자등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5조의2(공직자등이 아닌 자에 대한 부정청탁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등이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1.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p> <p>2. 검사·시험 또는 이에 준하</p>			

는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채용 · 승진 · 전보 등 인사업  
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  
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4. 각종 자문 · 심의 · 의결 위원  
회의 위원, 시험 · 선발 위원  
등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  
에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  
는 행위

5. 입찰 · 경매 · 연구개발 · 시험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  
설하도록 하는 행위

6.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특정 개인 · 법인 · 단체에 재  
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거  
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 · 교  
환 · 사용 · 수익 · 점유 · 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8.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  
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  
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9. 각종 평가·판정 업무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10.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의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업무의 진행상황·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문의 등을 하는 행위

2. 업무에 관한 확인·증명 등을 신청·요구하는 행위

3.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제11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무수행사인”이라 한다)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제11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① ----  
-----  
-----  
-----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1. ~ 4.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에 대하여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하는 경우 “공직자등”은 “공무수행사인”으로 보고,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로 본다.

1. ~ 4. (생략)

제16조(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등이 직무수행 중에 또는 직무수행 후에 제5조, 제6조 및 제8조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직무를 중지하거나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부당이득의 환수) (생략)

<신설>

제5조, 제5조의2 및 제6조-----  
--.

1. ~ 4. (현행과 같음)

② -----  
----- 제5조, 제5조의2 및  
제6조-----  
-----  
-----.

1. ~ 4. (현행과 같음)

제16조(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  
-----  
----- 제5조, 제5조의2-----  
-----  
-----.

제17조(부당이득의 환수)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등이 제5조의2를 위반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등 또는 제3자에게 교부된 금액 또는 물건이나 그 밖에 재산상 이익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2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을 위반한 공직자 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공직자등은 제외한다.

2. 자신의 배우자가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알고도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2조(벌칙) ① -----  
----- 5년  
----- 5천만원 -----  
-----.

<삭 제>

<삭 제>

3.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

4. (생략)

5. 제18조를 위반하여 그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공직자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2.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3. 제1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

<삭제>

1. (현행 제4호와 같음)

<삭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2. 제8조제1항을 위반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

21조제2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공직자등은 제외한다.

3. 자신의 배우자가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알고도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

5.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가목에 해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2. (생략)

④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품등은 몰수한다. 다만, 그 금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23조(과태료 부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2. (생략)

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6. 제1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18조를 위반하여 그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공직자등

③ -----  
----- 2년 -----  
--- 2천만원 -----  
---

1. 2.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제2호부터 제4호-----  
-----  
-----  
-----  
-----  
-----  
-----  
-----  
-----  
-----

제23조(과태료 부과) ① -----  
-----  
-----  
-----  
-----

1. 2.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	
연 락 처	(044) 200 - 7703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 (제 회)	

공 직 자 의 이 해 충 돌 방 지 법  
일 부 개 정 법 률 안

제 출 자	국무총리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 전

## 1. 의결주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활동 내역 공개 및 사적이해관계 법인을 확인·관리하고, 고의적 부실 신고자 제재규정을 신설하여 이해충돌방지 제도의 강화하여 부정부패에 엄정하게 대응하려고 함. 또한, 비실명 대리신고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신고자 비밀보장을 강화하고 사적이해관계자 범위를 합리화 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3. 주요내용

가. 사적이해관계자 범위 합리화(안 제2조)

- 1) 공직자가 채용·임용 전 2년 이내 재직했던 법인·단체 및 2년 이내 대리·고문·자문을 제공했던 법인·단체는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하여 해당 법인·단체가 공직생활을 하는 전체 기간동안 사적이해관계자가 되어 직무관련자인 경우 신고·회피해야 하는 문제가 있음
- 2) 공직자가 공직채용·임용 전 3년 이내 재직하였거나 또는 공직채용·임용 전 3년 이내 대리·고문·자문을 제공했던 법인·단체에 대해 공직채용·임용 후 5년간 직무관련자인 경우 신고·회피토록 규정을 정비함
- 3) 사적이해관계자 범위를 합리화하여 제도 운영의 효율성이 증대됨

나. 이해충돌 신고 후 조치 전 ‘직무 일시중지’ 명확화(안 제7조)

- 1) 소속기관장은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를 받은 경우 7일 이내 직무대리자 지정, 전보 등의 조치를 해야 하고, 조치 전까지 직무수행 일시중지를 명할 수 있으나, 기관장의 별도 조치가 있기 전까지 공직자가 불공정한 직무수행이 계속될 우려가 있음
- 2) 공직자의 신고·회피 등 신청 후 소속기관장의 조치가 있기 전까지 공직자의 직무가 일시중지 됨을 명확하게 규정함
- 3) 신고·회피 등 신청을 한 공직자의 직무를 일시중지시켜 공직자의 자의적인 이해충돌 직무수행을 방지하고, 직무수행의 공정성 보장함

다. 고위공직자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공개(안 제8조)

- 1) 이해충돌방지법 제8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는 임용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임용 30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하나 소속기관장은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비공개 할 수 있어 고위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 신고에 대한 외부감사가 미흡함
- 2)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소속기관장이 비공개 할 수 있던 규정을 다른 법령에서 정보공개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함
- 3) 다른 법령에서 정보공개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고위공직자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이

해충돌 위반행위 사전예방 및 외부통제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  
됨

라. 고위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 법인의 확인·관리(안 제12조)

- 1) 공공기관은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 등이 운영하는 업체와 물품·용  
역·공사 등의 수의계약 체결이 금지되며, 공공기관은 이를 확인할  
의무가 있으나 공공기관에서 그에 대한 정보를 알기 어려운 상황임
- 2) 공직자 자신 또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대표인 업체 등에 대한 정  
보를 업무 개시 후 30일 내 소속기관에 제출하도록 함
- 3) 공직자가 실질적 영향력을 보유한 법인·단체를 등록해 소속 공직자  
가 알 수 있도록 하여 신고·회피 위반, 수의계약 체결 등 이해충돌 위  
반행위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됨

마. 비실명 대리신고 도입 및 조력비용 지원(안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신설)

- 1) 신고자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시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  
고의 취지·이유·내용을 적고 서명한 문서와 증거를 제출하여야 하  
는데 비실명 대리신고가 불가능함에 따라 신분 노출 및 불이익 등을  
우려하여 신고에 제약으로 작용함
- 2) 비실명 대리신고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비실명 대리신고 및 이에  
대한 조사, 쟁송, 보호신청 등과 관련하여 변호사 조력을 받은 경우  
지원 근거를 마련함
- 3) 비실명 대리신고를 통해 신고자 비밀보장을 강화하고 이해충돌 위

반행위에 대한 내부 감시를 강화하여 이해충돌 위반행위를 예방함  
바. 신고사건 ‘송부’ 근거를 법률에 마련(안 제19조)

- 1) 이첩 또는 종결처리 대상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건을 조사 기관에 송부할 수 있는데, 송부로 인해 조사기관의 직무가 추가되는 효과가 발생하는바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 법적 근거를 이첩과 같이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 2) 신고사건을 조사기관에 송부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규정
- 3) 송부의 법적 근거를 상향하여 법령 내용과 근거를 정비함

사. 불이익조치 절차 일시정지(안 제20조의2 신설)

- 1) 이해충돌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도 위원회가 직권이나 신고자의 신청에 따라 불이익조치에 대해 중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
- 2) 위원회가 이해충돌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절차가 잠정적으로 중지될 수 있도록 요구하고,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응하도록 함.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미이행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여 불이익조치 절차 일시정지 요구의 실효성 확보함
- 3) 보호조치 신청에 대한 국민권익위의 결정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신고자를 잠정적으로 보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함

아. 허위·불성실 이해충돌 신고자 과태료 부과(안 제28조)

- 1) 현행 법은 ‘사적이해관계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와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지 아니한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여, 신고·회피신청에도 불구하고 직무를 계속 수행한 공직자나 허위의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는 등 불성실하게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한 고위공직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미비함
- 2)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이후에도 직무를 계속 수행한 공직자나, 허위의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는 등 불성실하게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한 고위공직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3) 과태료 부과로 허위·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이해충돌방지 제재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라목 중 “공직자로”를 “공직자로 채용·임용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직자로서 공직자로”로, “2년”을 “3년”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공직자로”를 “공직자로 채용·임용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직자로서 공직자로”로, “2년”을 “3년”으로 한다.

제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 ③ 소속기관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조치를 할 때까지 해당 공직자의 신고·신청과 관계된 직무는 일시 중지된다. 이 경우 해당 공직자는 신고·신청과 관계한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된다.

제8조제4항 중 “공개할 수 있다”를 “공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2조제1항제6호 중 “「지방자치법」 제41조”를 “「지방자치법」 제49조”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1항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는 같은 항 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임용 또는 업무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수의계약 체결 제한대상을 소속 공직자가 알 수 있도록 지체없이 공지해야 한다.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비실명 대리신고) ① 제1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고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8조제3항에 따른 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자가 서명한 문서는 변호사의 인적사항 및 변호사가 서명한 문서로 갈음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하여야 하며, 신고자 또는 신고를 대리하는 변호사는 그 취지를 밝히고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위임장을 국민권익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신고자 본인의 동의 없이 이를 열람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의3(내부 신고자에 대한 지원) ① 위원회는 내부 신고자(「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7호에 해당하는 신고자를 말한다. 이 경우 “공익신고자”는 “신고자”로, “공익신고”는 “신고”로 본다)가 변호사로부터 다음 각 호의 조력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변호사에게 지급할 수 있다.

1. 내부 신고자가 제18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변호사로 하여금 신고를 대리하도록 한 경우

2. 내부 신고자가 제1호의 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쟁송절차 및 보호 조치·보상금 등의 신청과 관련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내부 신고자가 제1호의 신고와 관련하여 변호사의 법률상담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급받은 변호사는 동일한 원인으로 내부 신고자로부터 중복하여 비용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지급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환수하는 때에는 지급한 비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2. 제2항을 위반하여 비용을 중복하여 지급받은 경우

3. 착오 등의 사유로 비용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비용을 반환하여야 할 변호사가 납부기한까지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19조제1항 중 “이첩”을 “이첩 또는 송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이첩”을 “이첩 또는 송부”로 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①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이를 방지할 경우 회

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제20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신청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릴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보호조치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불이익조치 절차의 잠정적인 중지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신고등으로 인하여 보호조치신청인에 대한 불이익조치 절차가 예정되어 있거나 이미 진행중인 경우

2. 신고등으로 인하여 보호조치신청인에 대한 불이익조치가 행하여졌고 추가적인 불이익조치 절차가 예정되어 있거나 이미 진행 중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27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20조의2에 따른 잠정적인 중지 조치 요구를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조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아니한”을 “않거나 허위의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는 등 불성실하게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한”으로 한다.

2의2. 제7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직무 중지 기간 중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5. (생략)</p> <p>6. “사적이해관계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p> <p>가. ~ 다. (생략)</p> <p>라. <u>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u>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p> <p>마. <u>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u>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였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p> <p>바. ~ 아. (생략)</p> <p>7. (생략)</p> <p>제7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①·② (생략)</p> <p><u>&lt;신설&gt;</u></p>	<p>제2조(정의) ----- -----.</p> <p>1. ~ 5. (현행과 같음)</p> <p>6. ----- ----- -----.</p> <p>가. ~ 다. (현행과 같음)</p> <p>라. <u>공직자로 채용·임용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직자로서 공직자로 --- 3년 --</u></p> <p>마. <u>공직자로 채용·임용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직자로서 공직자로 --- 3년 -----</u></p> <p>바. ~ 아. (현행과 같음)</p> <p>7. (현행과 같음)</p> <p>제7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①·② (현행과 같음)</p> <p><u>③ 소속기관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조치를 할 때까지 해당 공직자의 신고·신청과 관계된</u></p>



공공기관과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5. (생략)

6.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7. ~ 9. (생략)

② (생략)

<신설>

<신설>

-----  
-----  
-----  
-----  
-----  
-----  
-----  
-----  
-----  
-----

1. ~ 5. (현행과 같음)

6. 「지방자치법」 제49조-----  
-----  
-----

7. ~ 9.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는 같은 항 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임용 또는 업무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을 소속 공직자가 알 수 있

<신 설>

<신 설>

도록 지체없이 공지해야 한다.

제18조의2(비실명 대리신고) ①

제1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고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8조제3항에 따른 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자가 서명한 문서는 변호사의 인적사항 및 변호사가 서명한 문서로 같음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하여야 하며, 신고자 또는 신고를 대리하는 변호사는 그 취지를 밝히고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위임장을 국민권익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신고자 본인의 동의 없이 이를 열람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의3(내부 신고자에 대한 지

원) ① 위원회는 내부 신고자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7호에 해당하는 신고자를 말한다. 이 경우 “공익신고자”는 “신고자”로, “공익신고”는 “신고”로 본다)가 변호사로부터 다음 각 호의 조력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변호사에게 지급할 수 있다.

1. 내부 신고자가 제18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변호사로 하여금 신고를 대리하도록 한 경우

2. 내부 신고자가 제1호의 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쟁송절차 및 보호조치·보상금 등의 신청과 관련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내부 신고자가 제1호의 신고와 관련하여 변호사의 법률상담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급받은 변호사는 동일한 원인으로 내부 신고자로부터 중복하여 비

용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지급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환수하는 때에는 지급한 비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2. 제2항을 위반하여 비용을 중복하여 지급받은 경우

3. 착오 등의 사유로 비용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비용을 반환하여야 할 변호사가 납부기한까지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19조(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①  
제1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이 조 제2항에

제19조(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①  
-----  
-----  
-----  
-----



제27조(벌칙) ① ~ ④ (생략)

<신설>

⑤·⑥ (생략)

제28조(과태료) ① (생략)

익조치를 한 자에게 불이익조치 절차의 잠정적인 중지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신고등으로 인하여 보호조치 신청인에 대한 불이익조치 절차가 예정되어 있거나 이미 진행중인 경우

2. 신고등으로 인하여 보호조치 신청인에 대한 불이익조치가 행하여졌고 추가적인 불이익 조치 절차가 예정되어 있거나 이미 진행 중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27조(벌칙)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20조의2에 따른 잠정적인 중지 조치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⑦ (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

제28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2. (생략)

<신설>

3. ~ 6.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지 아니한 고위공직자

2. (생략)

④ (생략)

② -----  
-----  
-----.

1. 2. (현행과 같음)

2의2. 제7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직무 중지 기간 중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

3. ~ 6. (현행과 같음)

③ -----  
-----  
-----.

1. -----  
----- 않거나  
허위의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는 등 불성실하게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한 -----

2.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연 락 처	(044) 200 - 7674